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이천송정중학교
ICHEONSONGJEONG



이천송정중학교

<http://www.icsongjeong.ms.kr>



목 차

1. 총칙	1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2
3.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4. 지필평가 문제지 보관 및 채점관리	8
5.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10
6. 결시자, 신체장애자 등의 성적처리	12
7. 출결 상황 관리	18
8. 기타 출결 상황 관리	21
9. 성적사정	22

2021학년도 이천송정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천송정중학교에서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움 중심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참된 학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방침]

1. 교육과정의 정상화·자율화·다양화·적정화, 배움중심수업,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3. 지역 실정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경기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평가한다.
4.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경기도교육청의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 협의 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성취기준의 지식, 기능, 태도를 고루 반영한다.
6. 교과목별 성취기준·성취수준을 토대로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7. 지적인 능력과 정의적 능력이 고루 통합된 참된 학력을 기르기 위해 교과별로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8.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9.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업과 밀착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확대한다.
10. 학습공동체 등 교과 모임을 활성화하여 교사의 평가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한다.
11. '자유학기 및 연계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경기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교 내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13.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9.3.1.),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보완한다.

14.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턴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에 의한다.
15.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침의 기준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조 [학업성적관리규정]

1.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1-486호, 시행 2021.3.1.),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7.9.),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2020.12.3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호, 2020.10.20., 일부개정, 시행 2020.10.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49호, 2021.12.31., 타법개정, 2021.1.1.),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01호, 2020.2.28., 일부개정, 시행 2020.3.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7호, 2021.1.21.,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2019.12.20., 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2019.3.1.), 제348호(2020.9.28.), 제365호(시행 2021.3.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1.2.),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장학자료 제2021-2호, 2021.3.1.)
2. 본교의 학업성적관리는 본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제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구성]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평가관리, 성적관리, 진로상담 등을 위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 시 평가관리위원이나 성적관리위원은 가급적 필수로 참석한다. 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과협의회를 소위원회로 둔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본교 학교 규모와 교무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단, 교감 미배치교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으로 한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는 교직원 외에 1명의 학부모 위원이나 외부전문가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되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장 결재를 득할 시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전자 병렬결재를 해

야 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조직 ◆



제6조 [임무]

1. 위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3. 평가관리위원은 평가와 관련된 계획(종류, 기간, 횟수, 출제 계획, 평가 기준 등), 평가 문항 검토(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 등), 평가 결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성적관리위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지필평가 시행에 따른 여러 사무, 성적처리,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진로상담위원은 학생계도, 학생·학부모와의 상담 및 진로상담자료 비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운영]

1. 모든 교직원이 학교성적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2. 평가의 타당성·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간 10회 이상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의 여러 사항을 검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협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8조 [심의내용]

본 위원회 회의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기준·반영비율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7.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원점수),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교과협의회)
 - 가. 수행평가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기타 (수행평가척도안 작성)
 - 나. 지필평가 영역, 방법, 문항 수 및 공동출제
 - 다. 이원목적분류표 작성
 - 라. 논술형 평가 영역, 반영비율 및 채점기준표
 - 마. 평가 분석 및 반성

제 3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9조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1.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2.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4.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평가 계획 수립]

1.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학기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수행평가는 다양한 교과교육활동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성취기준 단위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과제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유학기의 평가는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다양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한다.
 -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일제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실시하며,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다.
 -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평가는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연계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일제식 지필평가의 횟수를 축소하고 과정중심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며, 교과별 성취도를 산출한다.
 - 연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중점 연계 활동, 주제선택 중점 연계 활동, 예술·체육 중점 연계 활동, 동아리 중점 연계 활동) 평가는 연계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단, 주제선택 중점 연계 활동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여부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의 결정을 거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 연계 자유학기의 경우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100%로 실시하고, 성취도를 산출한다. 교과 내용과 관련된 주제선택활동은 수행평가 성취도 산출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시기·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지필평가 횟수는 학기당 2회 이내로 하되, 지필평가의 횟수, 성적 반영비율 등은 학업 성적 평가 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연계 자유학기 2학년 1학기 지필평가 1회 이내 실시(그 외 연계 자유학년 지필평가는 학기당 1회 이내 실시를 권장함.)
 -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수행평가 반영비율, 영역의 수 등을 학교별·교과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단, 지필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음(지필평가 성적 반영비율 100% 금지).
 -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하여 지필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수행평가는 가급적 원격수업을 활용하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실시할 수 있음.
4. 모든 교과 학기 단위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다. 논술형 평가의 반영 비율은 학기 단위성적(지필평가와 수행평가 합산점수, 수행평가 100% 실시 과목점수)의 40%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정 편제상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20% 이상으로 한다. 단, 논술형의 반영비율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 서술형 평가 : 요약, 개념, 이해, 설명, 풀이과정 등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평가
 - 논술형 평가 : 자기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평가

5.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으로 한다. 과목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타당도 높은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6. 교과학습 평가는 평소 수업 활동이 자연스럽게 평가로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력 등의 고등 사고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7. 정의적 능력 평가는 교과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의적 요인을 추출하고 수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되, 적용 방법 및 시기, 결과 활용 등은 학교와 교과 실정에 맞게 교과협의회에서 정한다.

- 정의적 능력 평가 : 흥미, 태도, 자아개념 등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을 평가하고 성취정도를 파악하는 것

8. 평가계획은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과별 성취기준을 근거로 하여 학기별로 수립하되 특정 시기에 평가가 집중되어 학생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한다.
9. 학기별로 수립된 평가 계획(수행평가 포함)은 학기 초에 공시하고, 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대국민 학생·학부모 서비스, 학생 교육, 학부모 연수,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 평가 계획의 정보 공시는 수시이며 평가 계획을 득이 변경할 때는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평가 계획 변경 시 반드시 부모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수정된 평가 계획을 재 정보공시 한다. 단, 평가계획의 변경은 평가 실시 이전에만 가능하며, 평가 실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10. 모든 교과목은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참고하여 매 학기 시작 전에 학교 수준의 교과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마련하고 수업과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11.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학기별·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평가의 종류,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
 -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 정의적 능력 평가 방안, 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등
12.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수행평가 및 논술형 평가 반영비율의 하한선을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계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의 방법과 관리]

1. 지필평가 문항 출제와 검토

- 가. 평가의 영역, 내용, 성취기준 등을 포함하여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고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가 높은 평가문항을 출제하되,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나. 성적산출을 같이하는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 반드시 공동출제·검토·편집을 한다.
 - 평가 문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문항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항 검토 교과별 협의회 시간을 갖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 다. 동일 교과담당교사 간 공동 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하고, 소수 우수 학생 변별만을 위해 지나치게 어렵거나 타당도가 결여된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 라.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로 배점을 표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

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또한 평가 문항 수 적정성 확보, 문항별 배점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여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마. 평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 범위, 평가목표, 문항의 유형 및 형태, 시험 시간, 출제 및 편집 방법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 바. 논술형 평가는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며, 반드시 채점기준표를 작성한다.
 - 채점기준표에는 인정 범위의 설정(모범답안, 인정답안, 예시답안 등),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을 제시하고, 채점기준표 작성의 번거로움이나 채점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단답형 형태의 출제는 지양한다.
- 사. 객관식 문항은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5지 선다형으로 출제한다.
 - 시판 중인 참고서 등 기출제된 문항을 전재하여 출제하지 않는다.

2. 수행평가 방법 및 관리

- 가. 수행평가는 교과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 학교장은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채점)기준을 마련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 나. 수행평가는 교과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타당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가 높은 평가가 되도록 한다. 수행평가는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정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다.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평가 시기·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수행평가가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안내한다.
- 라. 수행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의 시기, 영역, 방법, 횟수, 세부기준(배점), 반영비율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마. 수행평가는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평가로 실시할 수 없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기간과 겹쳐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학교와 교과에 따라 교육내용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상황 안에서 구안하여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 및 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형 작품평가를 지양하며, 정규 수업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 바. 수행평가는 논술형으로만 실시할 수 없으며, 각 교과에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과 역량과 관련된 학생의 성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는 실기(기능), 태도, 감상, 미적체험, 이론,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업시간 내의 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사. 정의적 능력 평가는 정량 평가보다 정성 평가의 성격이 강해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추출한 교과 태도 요소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모듈별 평가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고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아. 수행평가의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확인 시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수행평가의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학생이 수행평가 성적을 확인한 후 2 일 이내로 한다. 절차는 지필평가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 자.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반영비율, 평가의 내용과 방법, 평가 시기 등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피드백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차. 수행평가 결시자의 처리기준은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기 초 평가 계획에 반영하고 다양한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불공정 시비를 예방한다.
- 카. 전출 학생 발생 시 전출교에서는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며 전입교에서는 입력 여부를 전출교에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타.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의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 일람표등을 의미한다.
- 파.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학생 본인이 확인한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교과담당교사가 서명하고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제12조 [교과별 평가 비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각 교과협의록에 별도 비치한다.

제 4 장 지필평가 문제지 보관 및 채점관리

제13조 [문제지 인쇄·보관 및 시행 관리]

1. 시험 출제 문항의 저장은 작업 컴퓨터에 암호를 부여하고 저장하여 출제문항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지필평가 시간표 발표 이후 지필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출제 문항의 보안을 철저히 하게 한다.(교무실 및 인쇄실에 대한 학생 출입 통제 등)
3. 발간실 보안 책임 : 출제 원안의 인쇄과정에서 문제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문항지 인쇄 중에는 발간실의 보안을 유지하고 인쇄가 완료된 후 출제 원안은 즉시 회수하여 별도의 평가관리실(교장실 이중캐비닛)에 보관한다.
4. 지필평가 보안 관리

- 가) 지필평가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 나) 평가 관리의 공정성, 신뢰성, 보안성 확보를 위해 평가관리실을 운영한다.
 - 다) 평가관리실은 **교육연구부장**, 인쇄실의 보안책임자는 **교감**으로 지정한다.
 - 라) 지필평가 시행 기간 동안 평가관리실(교장실 이중캐비닛)과 인쇄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자기기 소지 금지, 인쇄시 담당자 입회, 인쇄실 평가지 수령즉시 당일 인쇄하되 1일 초과분은 평가원 안 보안책임자가 보관한다.
 - 마) 지필평가 원안지와 인쇄된 지필평가 문제지는 최종 인쇄 상태 및 매수 확인 후 반드시 평가관리실(교장실 이중캐비닛)에 봉인하여 보관한다.
 - 바) 학생의 답안지는 학교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채점을 위해 자택 및 다른 장소로의 답안지 이동을 금한다.(위탁기관 평가 실시 제외)
 - 사) OMR 답안지는 리딩 후 교감실 이중캐비닛에 보관하며 학생 확인 등 성적처리가 완료되면 봉인하여 서고에 보관한다.
 - 아)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 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자) 부정행위(평가문제지 유출, 답안지 조작 등)는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6장 19조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차) 지필평가 실시 이전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 보안 관리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 카) 교직원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 사고 발생 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 및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 등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5. 평가업무 담당교사가 평가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를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교과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교과담당교사가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학급별로 포장한 뒤 담당부서(교육연구부)에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출제 원안은 인쇄된 문제지 1부와 합철하여 교육연구부서에서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인쇄 담당자는 원지와 파지를 평가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원지와 파지를 별도 관리하여 평가 종료 후 파기한다. 또한 인쇄된 평가문제지 및 여유분(파지포함)을 교과 담당교사 개인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지필평가는 시험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하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7. 시험실의 배치는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년 간 혼반하여 실시한다.
 8. 감독교사의 배치는 시험실 당 1~2명으로 하고, 학부모 명예교사 시험감독 등의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9. 감독교사는 시험 시작 전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시험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10. 감독교사는 시험지 배분 과정에 학생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시험감독 중에는 정답의 단서가 될 만한 언행을 삼가며, 시험 시간을 엄수하여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교사는 학생들의 답안지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응시자 및 결시자 현황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의 소정 란에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답안지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하다.)
 12. 감독교사는 시험 시작과 종료시간을 준수하고 정해진 시험시간을 엄격히 확보한다.

감독교사가 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 입실하거나 종료시간 후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연장하여 특정 학급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시작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해진 시험 시간은 확보하여야 한다.

13. 시험기간 중 담임교사 및 학부모 시험감독 보조원의 담임학급이나 자녀학급 시험 감독을 배제하고 무선기기(휴대전화, PDA 등)의 휴대 등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차단한다.
14. 지필평가 시행 전에 감독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1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6. 감독교사는 답안지(서술형과 논술형 답안지, OMR 답안지)에 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하여 교과 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교과 담당교사는 답안지 매수 및 기재사항(인적사항, 과목코드 등)을 확인한다.

제14조 [지필평가 채점 관리]

1. 답안지 채점은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항별로 정답과 오답의 표시를 각각 분명히 한다. (서술형 채점시 정답이나 오답 중에 한쪽만 표시하여서는 안 됨)
2.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의 채점은 채점기준표에 따라 단계별 점수, 부분 점수를 인정한 내용이 답안지에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답안지를 전산 처리하는 경우 논술형 평가 문항점수의 표기와 실제의 채점 결과가 일치하여야 한다.
3.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의 채점은 동일 학년, 동일 과목의 교과담당교사가 1명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드시 교과별로 공동 채점을 실시한다.
4. 채점 결과는 반드시 2회 이상의 검증 또는 재검을 실시하여 정확을 기하고, 답안지 표지에 채점자와 재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5. 교과담당교사는 채점 등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생 본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개하여 확인함.) 또한 평가 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을 시험 종료후 2일로 공지하고 이의신청기간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지필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학생 본인이 확인 시 개인별로 성적조회를 하며 성적 게시나 일괄서명을 금지한다.
(1)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의견서<별첨 2>를 교사 종료 후 2일 이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 → 교과협의회 개최 후 검토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교과(교사)의 검토 결과 심의 → 검토 결과 공지 → 성적처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른 감사 기간을 고려하여 변경된 바와 같이 지필평가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학생답안지, 문항정보표(이원목적분류표), 출제원안지등은 당해 학교에 졸업 후 5년 이상 보관한다.

제 5 장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제15조 [지필교사 과목별 성적일람표 작성]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을 산출한다.
 ※ 2021학년도 기준 3학년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함.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3. 과목별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 100%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 교과와 과목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4.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년에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수를 달리할 수 있다.
5.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2021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 일람표

1학년 () 반

교과담당교사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 영역 (반영비율)	1차지필 평가(30%)	2차지필 평가(30%)	○○○ (10.00%)	◇◇◇ (10.00%)	□□□ (10.00%)			
번호	성명									
1	김**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	95	A(452)
2	나**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	71	C(452)
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5.00	42.9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		
학급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		
과목 평균									82.1	
과목 표준편차									10.1	

- ‘김**’의 1차 지필평가 환산점수 28.50은 100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경우의 예시이며, 수행평가 ○○○ 영역의 환산점수 8.80은 50점 만점에서 44점을 받았을 경우의 예시이다.
- 수강자 최고점·수강자 최저점·수강자 평균·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적일람표 합계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원점수는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성취도는 원점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전입학으로 인한 미이수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보충학습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수행평가 만점이 30점이고 반영비율이 20%일 때,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최종 시험일이다.
※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인정점 부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기준고사/영역의 기준점수와 평균점수·평균점수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학업성적관리규정과 나이스의 결시생인정점 부여기준관리 설정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은 당해 지필평가(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행평가 성적관리]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한다.
3. 평가기준, 반영비율, 평가의 내용과 방법, 평가 시기 등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기 수행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4. 수행평가 미응시자의 처리기준은 교과협의회를 거쳐 평가 계획에 반영하되, 다양한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불공정 시비를 예방한다.
5. 전출 학생 발생 시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한다.
6.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한다.)
 - ※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7. 교과별 평가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실시된 수행평가의 성적전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교육연구부에서 보관한다.

제 6장 결시자, 신체장애자 등의 성적처리

제17조 [결시생 인정점 부여]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로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준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는 그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에 시행하는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수행평가는 교과별 평가계획 기준 안대로 별도 부여함)

- 나이스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 설정

※ 일반결시

결시생 인정점 기준점수는 ‘평균점수비율(전입생제외)’ 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확인하여 필요 시 설정을 변경한다.

※ 모두결시

결시생 인정점 기준점수는 ‘학교자체 인정점부여’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설정을 변경한다.

※ 기준점수에 대한 설정 방법(과목 단위로 적용)

1. 100% 인정점 반영하는 경우

- 가.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
- 나.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학교를 대표한 경연대회’, ‘학교를 대표한 훈련 참가’, ‘현장실습’으로 인한 결시
- ※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개인적인 경기 참여로 인한 결시는 미인정 결시임.
- 라. **공상**으로 인한 결시
- 마. **경조사**로 인한 결시 (『제25조[결석] 2.출석 인정 결석의 바항』 참조)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 사. 상급학교 진학 시험의 경우, 당일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 아. 위의 각 항(가~사)에 해당하는 경우의 성적 산출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응시분의 원득점) × 1.0

- 가.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가 모두 위의 각 항(가~사)의 결시인 경우는 당해학년 당해학기 당해교과의 평균점수(전입생제외)를 결시자의 점수로 처리한다. 학기 중 지필평가를 1회 실시하는 교과도 결시인 경우는 당해학년 당해학기 당해교과의 평균점수(전입생제외)를 결시자의 점수로 처리한다.
- 차. ①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학생을 위탁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위 기관의 출결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 ※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 등

2. 80% 인정점 반영하는 경우

- 가. **질병**으로 인한 결시
 - 2일 이상의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첨부한다. 하지만 2일 미만의 질병일 경우는 학부모 의견서 및 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를 첨부한다.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은 건강 장애 학생의 결시**
- 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
 - 간병, 이사,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입증하는 담임교사 확인의견서 첨부한다.
- 라. 위의 각 항(가~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성적 산출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응시분의 원득점 × 0.8

- 마.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가 모두 위의 각 항(가~다)의 결시인 경우는 당해학년 당해학기 당해교과의 평균점수(전입생제외)의 80%를 결시자의 점수로 처리한다. 학기 중 지필평가를 1회 실시하는 교과도 결시인 경우는 당해학년 당해학기 당해교과의 평균점수(전입생제외)의 80%를 결시자의 점수로 처리한다.

라.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제18조 [결시생 미인정 결시 점수 부여]

1. 미인정 결시
 2. 징계로 인한 결시
 3.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학생의 결시
 4.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
- ※ 당해 지필평가 해당 과목의 최하점 -1점으로 부여한다. 단, 해당 과목의 최하점이 0점인 경우는 0점으로 부여한다.

제19조 [부정행위 교과목의 성적처리]

1.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는 유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하고, 부정행위자의 점수 부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2.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를 발견한 즉시 그 사실을 학생에게 알리고 시험 종료 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본인의 자술서를 받는다.
3. 당해 학생의 자술서와 답안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임시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소집대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해당 감독교사, 담당교과 지도교사로 구성하여 협의를 한다.
4. 협의된 결과를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에게 알리고 해당 교과 담당교사는 해당 학생의 교과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5. 2명 이상이 서로 합의 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두 0점 처리한다. (단, 강압에 의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요구한 학생은 0점 처리하고, 강압에 의해 보여준 학생이나 방조한 학생의 반영 점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생 득점의 50~70%안에서 반영비율을 정하여 부여한다.)

제20조 [재취학·전·편입학, 유예·면제자의 성적처리]

1. 재취학, 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2.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3. 원적교에서는 전출 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원점수와 항목별 반영비율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재취학, 전·편입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5. 재취학, 전·편입학, 유예, 면제, 전출학생 중 본교 학기말 평가가 가능하여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한다.
6. 학기말 평가 완료되기 이전에 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한 학생(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에서 제외한다.

7. 전·편입생의 원적교 선택교과가 본교와 동일(유사) 과목의 경우 원적교 선택교과목 성적을 본교 선택교과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본교 성적이 없는 경우)
8. 전·편입생의 원적교에서 본교와 동일한 선택 교과외 다른 선택과목을 복수로 이수한 경우 본교와 동일교과의 선택과목 성적만을 100%인정한다.
9.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0.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유예, 면제 등이 된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제21조 [신체장애 및 특수학생의 성적처리]

1. 신체장애 학생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처리는 다음 공식에 따라 처리하며, 일반 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예시 1> 수행평가의 일부 영역의 점수가 있는 경우

$$\text{점수} = \frac{\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기본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기본점수 제외)}}{\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frac{\text{당해자 수행평가 참여 영역 득점 총점}}{\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예시 2> 수행평가의 영역에 점수가 없는 경우

$$\text{점수} = \frac{\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기본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기본점수 제외)}}{\text{수행평가 참여 영역 배점 총점}} \times \frac{\text{당해자 지필평가 득점}}{\text{지필평가 배점 총점}}$$

<예시 3> 수행평가 100%의 경우에 점수가 없는 경우

$$\text{영역별 점수} = \text{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times \frac{\text{당해자 서술형·논술형 평가 영역 득점}}{\text{서술형·논술형 평가 영역 총점}}$$

2. 장애학생의 평가조정규정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 (2)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점자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음성 평가자료를 지원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 또는 목자(일반문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확대독서기(개인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 평가자료(118%, 200%, 350%/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을 위해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장애로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4)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학생을 포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듣기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성적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특정교과나 특정 영역에의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는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5.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반학생과 다른 시험 환경이 요구되는 학생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시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위 2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을 산출)

제22조 [코로나19 출결·평가]

1. 출결

가. 원격수업

- 1) 출결확인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출결 확인 기간은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확인한다.
- 2) 출결 기록 : 교과 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기록 장부(교과특성에 맞게) 활용하여 근거 기록 → 담임교사에게 메신저로 전달
- 3) 출결처리 : 교과 교사의 출결 기록 장부와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 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하다.
- 4) 실시간 쌍방향 수업
 - 확인·인정 방법 : 교사가 플랫폼 화면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참여) 여부 확인(인정)
 - 대체 확인 방법 :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하여 수업 당일 확인한다.
- 5)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 해당 교과 시간 콘텐츠 시청 댓글(플랫폼, 별도 학급방 등)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 학습 시작시간, 진도율, 접속기록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콘텐츠 활용 기간(출석 확인 기간)은 최종 3일(수업일 기준)내 확인한다.
 - 대체 확인 방법 : 해당 시간에 댓글이나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한다.

6)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 LMS를 활용한 접속기록,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한다.
- 기타 과제 인정 기준(인정 수준, 분량)은 시도별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마련, 학생의 수준을 감안한 과제 제시한다.

7)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8) 공공 LMS 플랫폼 내 학급방, 출결증빙 자료 등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학년도 종료 시 일괄 삭제됨(필요 자료 학년도 종료 전 다운로드)

나. 등교수업

1) 등교중지 학생 :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한다.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 ※ 다만,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한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2)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한다.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3)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하다.

- 유의사항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2. 평가

가. 기본 원칙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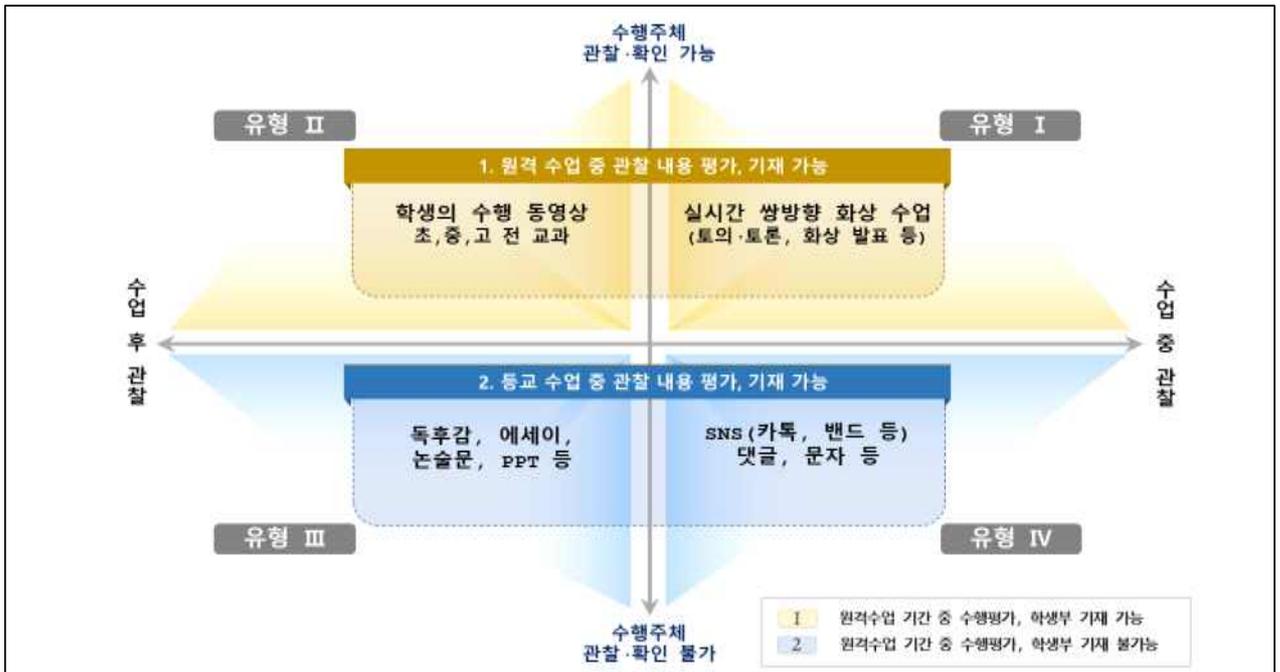
-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영역의 수 등을 학교별·교과별로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면 원격수업 시에도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하여 지필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수행평가는 가급적 원격수업을 활용하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실시할 수 있다.

- 수립(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 지필평가 등교하여 실시, 수행평가 원격수업 학생평가 원칙(4가지 유형) 참조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 수업 중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습 수준을 확인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참여도·태도 등을 관찰하여 학생 상담·지도에 적극 활용한다.
- 나. 결시생 인정점 부여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은 제6장 제17조 【결시생 인정점 부여】 1, 2항 산출식에 의거한다.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결시 유형에 따른 인정점 반영 비율]

-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학생과 실거주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등은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출석인정결석'이므로 100% 인정점 반영
 -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하므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고위험군 학생(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이 감염을 우려하여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면 100% 인정점 반영, '질병결석****'에 해당하면 80% 인정점 반영
- 기타 미등교 학생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점 반영 비율을 결정
 -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시 유형에 따른 인정점 산출 기준]

- 일부 학생 결시의 경우
 - 동일 학기 내 해당 학생의 지필 또는 수행평가 등 기준점수를 활용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 * 수행평가는 여러 번 기회를 부여하여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교, 학년, 학급 또는 과목 단위 미실시의 경우
 - 학사 일정상 평가가 불가능한 학교에서는 평가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여 실시하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하여 처리함.

[산출 기준 참고(예시)]

- * 동일 학기 내 해당 학생의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 동일 학기 내 해당 학생의 동일 과목 지필평가 시험 점수 활용
 - 동일 학기 내 해당 학생의 동일 과목 수행평가 점수 활용
- * 동일 학기 내 해당 학생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 이전 학기 해당 학생의 동일(유사) 과목 점수 활용
 - 동일 학기 내 해당 학생이 응시한 나머지(유사 또는 모든) 과목의 본인 지필평가 평균점수 활용
 - 동일 학기 내 나머지 학생의 동일(유사) 과목평균점수 활용
 - 이외 기타 방법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다. 평가계획 조정 :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 지필평가 횟수,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한다.

* 수립(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라.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중 인정점 부여 방안

- ▶ 확진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 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등은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출석인정결석'이므로 100% 인정점 부여
- ▶ 고위험군 학생(기저질환 학생)이 감염을 우려하여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면 100%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에 해당하면 80% 인정점 부여
- ▶ 기타 미등교 학생의 경우, '기타결석'에 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

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한다.

마. 지필평가

- 지필평가의 횟수, 성적 반영비율 등은 학업 성적 평가 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 단, 지필평가로만 평가할 수 없음(지필평가 성적 반영비율 100% 금지).
- 지필평가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운영한다.

감염병(코로나19 등)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필평가 운영 [예시]

- (교직원 연수) 평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교직원 사전교육 실시
- (시험실) 학년 또는 학급 단위 혼합 시험실 운영을 자제하고, 유희공간을 활용해 학생을 분리 배치하는 등 학교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험실 운영
- (별도 대기실 운영) 시험 전·시험 중 발열, 호흡기 증세가 나타난 학생 발생 시 보건실로 연계하여 건강상태 확인 및 별도 대기실에서 보호자 연계 시까지 학생 대기 후 귀가 조치
- (시험감독) 외부인의 학교 출입 최소화를 위해 학부모 감독관 운영 자제
 - ※ 학교는 학부모 감독관제에 상응하는 별도의 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시험일정) 지필평가 기간 축소 또는 1일 시험 과목 수 조정, 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시간 배정 등 탄력적 운영
 - ※ (예시) 2학년은 오전, 1학년은 오후로 시험시간 조정 등
- (별도 시험실)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음.
- 그 외 시험 방역 관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 1.)를 참고

바. 수행평가

- 수행평가 반영비율의 하한선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계획·운영할 수 있다.
- 감염병(코로나 19 등) 상황에서는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거나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모둠형 수행평가 등)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방역 강화 등 조치 후 실시한다.
- 원격수업(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등)에서도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 가능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한다.
-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간 내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실시를 권장한다.

사. 논술형 평가

- 모든 교과와 학기 단위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하되, 반영비율의 하한선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계획·운영할 수 있다.
- ※ 수행평가를 논술형 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음.

아. 학생부 기재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원격수업의 내용(또는 과제 내용)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원격수업(또는 과제)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
- (교과세특)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 ※ 위탁교육기관, 특수학급 및 순회교육 담당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포함
-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연계 시, 원격수업 내용(과제내용) 연계 기재 가능

※ (3단계 시)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 원격 수업 내용(포함 가능)

자. PASS제 운영 방안(중학교 1, 2학년)

-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에서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하는 경우 1, 2학년은 성적을 미산출(평가 미 실시)하는 PASS제 적용이 가능하다.

※ 단, PASS제를 적용하여도 중학교 3학년은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을 산출해야 함.

중학교 1·2학년 PASS제 적용 및 성적 처리 방법

- (적용시기) 전국 평균 수업일수 1/3 시점에 PASS제 적용 여부 결정
 - ※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안내 예정
- (적용방법) 학생이 진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수(P) 처리하고,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확인하여 맞춤형 피드백 제공 활성화
 - *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성적처리)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참조

제23조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1. 전산 처리한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학생들에게 답안지와 함께 확인시키고 교과 담당 교사가 재확인한다.

- 학생 본인이 확인한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학생들의 이의 신청, 점수처리, 확인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면 교과담당교사가 서명하여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서 보관한다.

2.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특기할 만한 사항 기록 방법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나. 체육·예술 교과(군)의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시간 입력기준은 출석

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체육·예술 교과(군)의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3. 자유학기의 평가와 기록

가.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은 '공란'으로 둔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학생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나.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학생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다. 자유학기 활동 4개 영역(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의 성장과 발달 등은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란에 모든 학생에 대하여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이수시간과 함께 문장으로 입력한다.
 - 라. 자유학기 활동의 평가를 기록할 대상 학생의 비율은 100%로 한다.
4. 교과 연계한 자유학기의 평가와 기록
- 가. 일반 교과 과목은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를 산출하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생들의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기록하되 대상 학생은 반별 20% 이상으로 한다.
 - 나.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를 산출하며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되 대상 학생은 반별 20% 이상으로 한다.
 - 다. 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활용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 고유의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 줄에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명을 괄호와 함께 교사가 관찰한 학생들의 활동내용,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하고 교과 연계한 주제선택 활동의 평가를 기록할 대상 학생의 비율은 20%이상으로 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란에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명, 교사가 관찰한 학생들의 활동내용,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단,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의 일부만 중점 연계 자유학기 활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기록 대상은 학교 자율로 결정한다.
 - 동아리 활동 편성 시간 34시간을 모두 동아리 중점 연계 활동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모든 학생 기록한다.
 - 동아리 활동 편성 시간 34시간 중 17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17시간은 동아리 중점 연계 활동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17시간에 대한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 기록, 동아리 중점 연계 활동 17시간에 대한 기록 대상은 학교 자율 결정한다.
 - 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경우, 프로그램명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다음 줄에 연계 자유학기 프로그램명을 괄호와 함께 직접 입력해야 한다.
 - 다. 정규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동아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계 자유학기의 예술·체육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명은 부서명으로 대신한다.

제 7 장 출결 상황 관리

제24조 [수업일수]

-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 (재취학·편입학·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4.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유예(면제), 다음해 2학년 3.20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5. 재취학·전입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25조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유예(면제), 다음해 2학년 3.20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 제외)
- 다. 장기결석이란 연속해서 5일 이상 결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단, 장기결석, 기타결석, 횡수가 많은 단기결석의 사유는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입력하지 않는다.

2. 출석 인정 결석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예 :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1항 제8호)에 의한 소년원의 교육기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지필평가 기간 제외)
-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 제20호, 2015.1.30)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 아.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 출석인정 증빙서류 :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생리로 인한 내용이 포함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자료)
- 자.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이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 계획 기간 내에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 차.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 카. 학교장이 인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 20일 이내**로 지필평가 기간과 이의 신청기간에는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불가하며 조퇴 시에도 1일로 간주함
- 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질병 결석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소속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도피, 교도소 수감, 구속(구인, 구금, 구류) 등)
- 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 가.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입증하는 담임교사 확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지각·조퇴·결과]

1.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후 9시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인 학급 종례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이다.
(단, 일정변경 시 변경된 일정에 따르며, 정규수업 종료 후 등교자는 결석처리 한다.)
2. 결과는 수업에 불참하거나 수업시작 10분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등을 말한다.
3. 『제25조[결석] 2.출석 인정 결석의 가항~하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지각·조퇴·결과), 미인정(지각·조퇴·결과), 기타(지각·조퇴·결과)로 처리한다.
5.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조퇴로, <지각·조퇴>인 경우는 조퇴로, <조퇴·결과>인 경우는 조퇴로, <지각·결과>인 경우는 결과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질병(지각·조퇴·결과), 미인정(지각·조퇴·결과), 기타(지각·조퇴·결과)>가 중복 발생시 우선 미인정(지각·조퇴·결과)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질병(지각·조퇴·결과), 기타(지각·조퇴·결과)>가 중복 발생시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결과 1회로 처리한다.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학년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 8 장 기타 사항

제27조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의 성적처리]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병원학교, 화상수업 등)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다만,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보충학습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출결처리
 -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결석한 학생의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결과'의 구분은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및 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3. 성적처리
 -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지 제9호 및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나. 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제28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처리]

1.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의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 방법대로 성적 처리 한다.)
2. 출결처리
 - 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의 출결확인서와 소속학교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한다.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소속 학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성적처리
 - 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부득이한 경우 본 규정 제21조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한다.

제2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1.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처리 등 사무 관리는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학급 담임교사가 한다.
2. 조기 진급자의 2학년, 조기 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영역은 공란으로 두되, 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제30조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1. 소년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한다.
2. 전적 학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적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기록·관리하며 성적처리는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3. 대안교육 위탁기관 위탁학생의 성적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4.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기관을 말한다.

제31조 [전입생 미이수·중복 이수 학생의 성적 처리]

1. 보충학습과정 이수기준, 보충학습과정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보충학습과정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집중이수로 인한 전입학생 미이수·중복이수 문제 해소 계획」에 의거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교과 및 학생 특성을 반영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성 적 사 정

제32조 [목적]

학생 성적 사정 규정 기준안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근면, 성실한 학습 기풍과 학업성적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3조 [회의 시기]

사정회는 및 진급 사정회는 학년말에 실시한다.

제34조 [구성 및 회의 주재자]

사정회 및 진급 사정회는 전 교사가 참여하며 교감이 주재한다.

제35조 [회의 성격]

사정회 및 진급 사정회에서는 심의 및 자문역할을 하며 최종 판정은 학교장이 한다.

제36조 [사정회 심의사항]

1.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교내 및 대외 표창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장상 : 본 규정 제38조[표창 종류 및 기준]에 따라 표창한다.
 - 나. 대외상 : 졸업식 때 고입 내신성적 고득점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순으로 표창한다.
 - 1) 1순위 : 교육장상
 - 2) 2순위 : 학교운영위원장상

- 3) 3순위 : 학부모회장상
- 4) 기타 순위 : 시장상, 국회의원상, 시의회 의장상 등은 추천 요청 순서에 의함
- 3.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심의한다.
- 4. 사정회의 심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5.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표창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시상할 수 있다.

제37조 [사정회 준비]

- 1. 학급담임은 학급 사정안을 작성하여 학년부장에게 제출한다.
- 2. 학년부장은 제출된 학급사정안을 관련부서의 담당교사의 협조를 얻어 확인한 후, 학년 사정안을 작성하여 사정회 전에 교무기획부로 제출하여 확인한 후, 전 교사에게 배부하며, 학급담임교사는 사정회에서 학급의 사정안을 발표하도록 한다.

제38조 [표창 영역]

출석상황 영역, 특별활동 영역, 교과별 및 부서별 교과관련 영역, 행동발달 영역으로 나누어 평정하여 시상하며, 동일한 영역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39조 [표창 종류 및 기준]

- 1. 출석상황 영역 (졸업 시에 3학년만 시상하며, 고입내신에 반영하지 않음)
 - 가. 3년 개근상 : 3개 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및 결과가 한 번도 없는 학생
- 2. 특별활동 영역 (졸업 시에 3학년만 시상하며, 고입내신에 반영하지 않음)
 - 가. 공로상 : 학생자치회 임원 등 재학 중에 학생자치회 활동 등 뚜렷한 공로가 있어서 담당 교사의 추천이 있는 학생
- 3. 교과별 및 부서별 교과관련 영역 : 교과별 및 부서별 교과 관련 대회 우수자에 대해 참여인원의 20%이내 또는 부문별 참여인원의 20%이내의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장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단, 학기 초 계획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대회만 인정하며 하위등급 수상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인원을 더 많이 시상하지 않는다.
- 4. 행동발달 영역 : 당해 학년 미인정결석이 없으며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 대상자는 학년별 참가인원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관련 지도교사가 추천한다.
 - 가. 봉사상 : 봉사정신이 특히 투철하고 봉사활동 사실이 뚜렷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1) 학생회, 바른생활부, 방송반 등 기타 교내 활동에 열성적으로 봉사한 학생
 - 2) 품행이 단정하고 남과 사회,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뚜렷한 학생
 - 나. 효행상 : 효행을 몸소 실천한 사실이 뚜렷하여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학생
 - 다. 배려상 : 남을 도와주고 보살피려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실이 뚜렷한 학생
 - 라. 환경상 : 주위의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몸소 실천한 사실이 뚜렷한 학생
 - 마. 존중상 :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실이 뚜렷한 학생
 - 바. 행동발달 영역의 가항 ~ 마항까지의 상은 복수 수여를 할 수 없고, 전체 영역을 통틀어 전체 재적학생의 20%이내 범위에서 학기별 1회(5월, 10월)에 걸쳐 표창한다.

<부 칙>

①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장학자료 제2021-2호, 2021.3.1.)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에 의한다.
본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별첨1> 학생평가(지필평가) 관리 자체점검표

학교명				점검일자	20 . . . (요일)
작성자	(서명)	확인자(교감)	(서명)	최종 점검자(장학사)	(서명)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 ×)	비고
출제	평가 출제와 관련하여 출제 중 보안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출제 인쇄본 관리 및 보관장 보안 관리 철저, 교사연구실 출입금지 및 출제 기간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등)				
	평가 시행 전 보안 관련 교직원(행정 직원 포함) 연수를 실시하는가?				
	평가 자료(원안, 정답지 등)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가?				
	출제파일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 를 이용하여 관리하는가?				PC하드디스 크 보관 금지
	평가 관련 자료의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하고 있는가?				
	교사가 보안이 확보된 장소에서 문제를 출제하는가?				
	평가 원안 결재본을 이중 잠금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하는가?				
인쇄	평가 문제지 인쇄기간 동안 평가담당자, 교과 담당교사, 인쇄담당자 외 인쇄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인쇄실에서는 평가지 수령 즉시 인쇄하고, 인쇄가 마감된 원안지를 회 송하는가? (당일 인쇄 원칙, 1일 인쇄 초과분 평가원안지를 원안지 보안책임자가 보관)				
	평가 문제지 인쇄 작업 동안 평가담당자 또는 교과 담당교사의 입회 등 인쇄 과정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평가 문제지를 인쇄 즉시 별도 보관 장소(평가관리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가?				
	평가 문제지를 이중 잠금장치 캐비닛(또는 이중 철제문)에 보관하 고, 보안 경비시스템을 가동하는가?				
	평가 문제지 보관 장소에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CCTV 등) 가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문제지 보관 장소의 보안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시행	인쇄 작업 후 인쇄 원지 및 과지를 포함한 제반 시험 관련 자료를 평가 문제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평가 문제지 보관 캐비닛의 최종 봉인을 하는가?				
	해당 과목 평가 문제지를 교사 당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는가?				
	감독교사가 교사실에서 평가 문제지를 개봉하는가?				
채점	감독교사는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는가?				
	감독교사는 폐기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는가?				
	채점 교사는 답안지 인수 즉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는가?				
	채점 기간 중 학생 답안지를 보안이 확보된 별도 보관 장소(평가관리 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가?				
보관	채점 기간 동안 교무실 등에 학생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가?				
	채점 교사는 보안이 확보된 장소에서 채점을 하고 있는가?				
전체	학생의 확인이 마감된 답안지를 봉인하여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 고 있는가?				
전체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 학교 재학 중일 경우 해당 학생의 평가 관련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가?				
종합 의견					

<별첨2> 지필평가(수행평가) 이의신청 의견서 양식

지필평가(수행평가) 이의 신청서				
평 가 시 기	() 학 기 () 차 () 학 년			
문 항 정 보	과 목 명		문 항 번 호 (수 행 항 목)	
이 의 신 청 의 건				
20 년 월 일				
신청자 정보				
학 번		성 명	①	
※ 신청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학생: (학 년 반 번 이 름)				
학생과의 관계		성 명	①	

*문항별로 각 1장씩 작성